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규정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55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윤준병의원안(제221565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벌칙 적용 시 심사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안 제21조의2 등)	3

I. 윤준병의원안(제2215655호)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5. 12. 29.
3. 회 부 일 : 2025. 12.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 등에서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핵심 절차이나,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건축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서를 정확히 독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심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 위촉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구성으로 인해 ‘제 식구 찹기기’ 식의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임.

이에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심사위원 선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나 민간전문가,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

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력한 부패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3. 검토의견

가.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벌칙 적용 시
심사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안 제21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1조의2(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발주하려는 자는 공모안의 심사를 위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④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도서의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u> <u>1.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u> <u>2.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u> <u>3.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u> <u>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u> <u>⑤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신설></u> 1. ~ 3. (생략)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 제) ----- ----- ----- -----. <u>1. 제21조의2에 따른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u> <u>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u>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공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건축물등¹⁾의 설계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발주하는 경우 공모안의 심사를 위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안 제21조의2 신설),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호 신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생략)

현행법²⁾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³⁾,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도서를 정확하게 해석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존 지침에서 규정하던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방법 등의 내용을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심사 진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3) 건축 설계공모 ‘불공정 경험 93.9%’, 설계공모 참여 않는 주된 이유로 꼽아(건축사신문, 2024. 4. 1.)
- 설문에 따르면, 설계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응답자의 거의 3/4이 ‘불공정성’을 들었으며, 약 1/3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더욱이, 참여한 설계공모에서 불공정성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은 93.9%에 달했다. 이는 건축 설계공모가 당면한 중대한 공정성 문제를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축 분야의 질적 성장과 혁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불공정성을 느낀 주된 원인으로는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 및 금품 제공’,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특정 학교나 지역에 편중된 심사위원 구성’ 등이 지목됐다. (이하 생략)

개정안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1조의2제4항과 관련하여 “건축도서의 해독이 가능한 자”는 법적 정의가 없고 주관적인 용어이므로, “건축사 등 건축도서의 해독이 가능한 자”와 같이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아래 수정의견 참조).

둘째, 안 제21조의2제4항 중 안 제2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조문은 안 제21조의2제3호와 동일한 형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35조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과 관련하여 설계 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제1호에 추가하면서 현행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조항이 다른 법률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⁴⁾ 안 제35조 제1호를 삭제하고 이를 안 제35조제4호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나, 안 제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심사위원의 위촉,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4)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123면

- 법률상의 조·항·호는 해당 법률 및 다수의 다른 법률에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으므로 조·항·호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해당 조·항·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호 및 다른 법률도 함께 정비하여야 한다.

위임한 것에 대해 현행법⁵⁾에서 공모방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21조의2(설계공모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발주하려는 자는 공모안의 심사를 위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도서의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 2. 「건축기본법」 제23조제1	제21조의2(설계공모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발주하려는 자는 공모안의 심사를 위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사 등 건축도서의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2. 「건축기본법」 제23조제1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항에 의한 민간전문가 3.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3.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 3. (생략)	제35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 ----- 1. 제21조의2에 따른 설계 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35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개정안과 같음) <삭 제>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의2에 따른 설계 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문의처

02)6788-5585